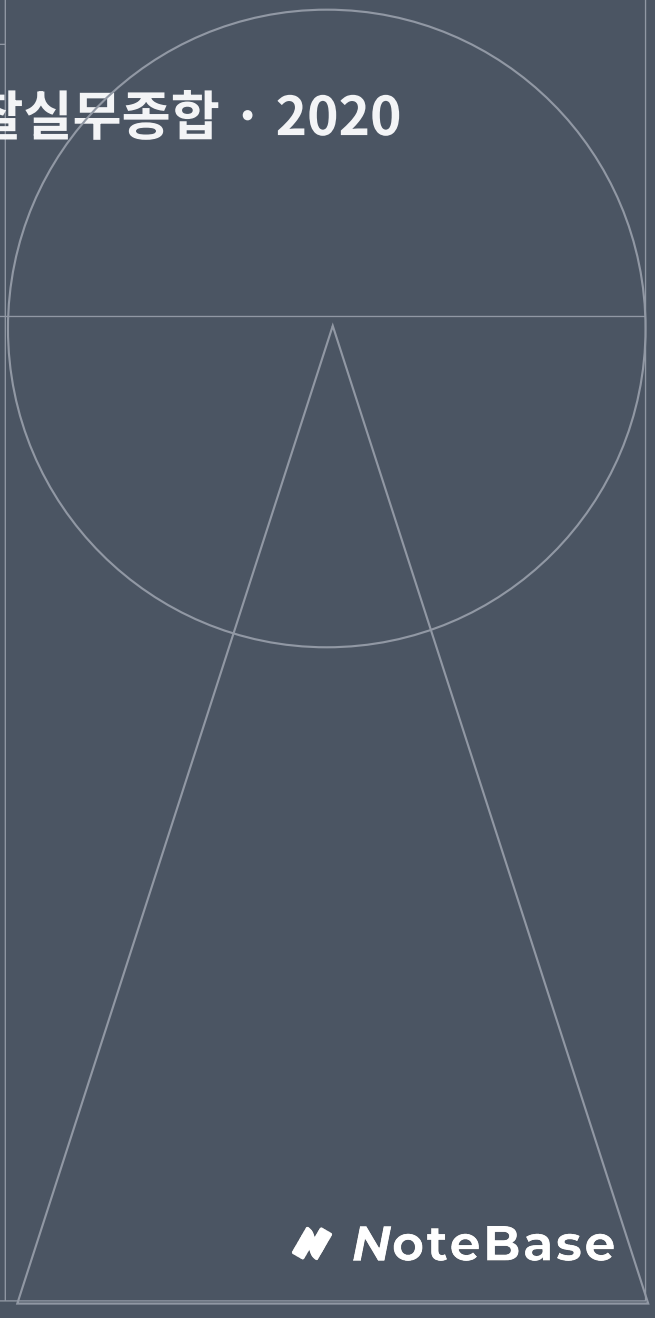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실무종합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실무종합 · 2020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실무종합 · 2020

문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활동이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보통경찰기관의 활동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위험방지 작용을 기준으로 한다. 경찰의 범죄수사처럼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 활동**도 있으므로 두 개념을 전부 포함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어느 기관이 수행하는지가 아니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경찰을 파악한다.

② O: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경찰활동을 말한다. 경찰작용의 내용이나 성질보다 그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기준으로 한 개념이다.

③ O: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소극적 목적**의 작용이다. 여기서 소극적이라는 말은 공공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막아 질서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④ X: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해서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경찰기관의 **범죄수사 활동**은 경찰기관이 담당하는 임무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만,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사법작용이므로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④이다.

NoteBase

문 2.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험'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한다.

② 위험에 대한 인식은 외관적 위험, 위험혐의, 추상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위험혐의'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④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3번

①

보호되는 개인과 공동체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가 객관적으로 감소한 것은 **손해**이다. 위험은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태**이다.

②

위험에 대한 인식은 **외관적 위험·위험혐의·오상위험(추정적 위험)**으로 구분한다. 추상적 위험은 구체적 위험과 대비되는 **위험의 현실성에 따른 분류**이다.

③

합리적으로 판단해도 위험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있으나 **위험의 존재를 확정할 수 없고 경찰도 그 불확실성을 인식하는 상태**가 위험혐의이다.

④

외관적 위험에 대한 적법한 경찰권 발동이라도, 손실 발생에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재산의 손실을 입으면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이 발생한다**. 책임이 있는 자도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한 손실**은 보상받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NoteBase

문 3. 다음은 경찰의 부패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전체사회 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 '썩은 사과 가설'은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해 펠드버그는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 '구조원인 가설'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① ㉠(O) ㉡(X) ㉢(O) ㉣(X)
② ㉠(O) ㉡(O) ㉢(O) ㉣(X)
③ ㉠(X) ㉡(O) ㉢(O) ㉣(X)
④ ㉠(O) ㉡(X) ㉢(O) ㉣(O)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선배 경찰의 부패행태를 배우며 신임 경찰도 부패하게 된다는 설명은 **'구조원인 가설'**에 해당한다. 작은 호의의 수수가 습관화되면서 더 큰 부패로 나아간다는 설명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 O: '전체사회 가설'은 경찰부패의 원인을 **시민사회의 부패한 관행과 환경**에서 찾는다. 경찰도 사회의 일부이므로 시민이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거나 부패를 묵인·조장하는 환경이 경찰의 부패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 X: 선배 경찰의 부패행태가 조직 안에서 신임 경찰에게 학습·전파된다는 설명은 **'구조원인 가설'**에 해당한다. '썩은 사과 가설'은 일부 경찰관의 개인적·도덕적 결함에 주목하며, 부적격자가 채용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조직에 들어오는 데서 부패의 원인을 찾는다.

㉢ O: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사소한 호의나 이익의 수수가 더 심각한 부패로 이어지는 과정을 강조한다. 펠드버그는 경찰관이 작은 호의와 직무수행을 왜곡하려는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작은 호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큰 부패로의 진행이 필연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비판한다.

㉣ X: 작은 호의의 수수가 습관화되어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나아간다는 설명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해당한다. '구조원인 가설'은 호의의 크기가 점차 커지는 과정 자체보다 조직 내부의 부패한 관행과 선배·동료의 영향으로 신임 경찰이 부패에 사회화되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 O, ㉡ X, ㉢ O, ㉣ X의 조합인 ①이 맞는다.

NoteBase

문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서 규정하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

정답 4번

①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②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직무 관련성이나 기부·후원·증여 등의 명목과 관계없이**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 ·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NoteBase

③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증여는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6>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④

직원상조회·동창회 등 단체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6>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 동호인회 · 동창회 · 향우회 · 친목회 · 종교단체 ·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NoteBase

문 5.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은 백범 김구이며, 대한민국 경찰 역시 임시정부의 경찰활동 또는 경찰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미군정 시기에는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는 등 조직·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③ 1946년 이후 중앙행정기관이었던 경무부(警務部)가 1948년 「정부조직법」상에서 내무부 산하의 국(局)으로 격하되었다.

④ 1969년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인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미군정 시기가 아니라 정부 수립 후인 1953년**에 제정되었다. 미군정 시기의 경찰조직 정비와 경찰작용의 기본법 제정을 혼동한 설명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백범 김구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으로서 임시정부 경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경찰은 임시정부 경찰의 활동과 나라·국민을 위한 정신을 계승한다는 역사적 정통성을 갖는다.

② X: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미군정 시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53년 12월 14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그 행사 한계를 정하는 경찰작용의 기본법이다. 경찰조직이 정비된 시기와 경찰작용의 기본법이 제정된 시기는 서로 다르다.

③ O: 1946년 경무국이 경무부로 승격되어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되었으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내무부 산하 치안국**이 되었다. 따라서 독립된 부에서 내무부 소속의 국으로 조직상 지위가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④ O: 「경찰공무원법」은 **1969년 1월 7일** 제정되었다. 경찰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에 포함되어 있던 경찰인사 규정을 분리한 특별법으로, 임용·복무·신분보장 등 경찰공무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제정 시기를 미군정 시기로 설명한 ②가 가장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문 6.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훈령의 형식적 요건으로는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사항일 것을 들 수 있다.

② 훈령의 실질적 요건으로는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명확할 것,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할 것, 내용이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을 들 수 있다.

③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④ 하급관청 구성원에 변동이 있더라도 훈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하급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사항에는 훈령을 발할 수 없다.** 상급관청의 지휘·감독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독립적 판단의 영역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훈령은 훈령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하고 하급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사항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항에까지 상급관청이 훈령으로 판단을 지휘하면 독립성을 보장한 취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② O: 실질적 요건은 훈령의 내용 자체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다. 훈령은 무엇을 이행해야 하는지 명확하고 실제로 이행 가능해야 하며, 법규에 어긋나거나 공익을 해치는 내용을 명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명확성, 적법·타당성, 공익 적합성**은 실질적 요건에 해당한다.

③ O: 여기서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을 넓게 이르는 말이다.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을 정하지만, 지시처럼 **특정 사무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명령**을 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O: 훈령은 특정 공무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급관청의 의사를 구속**한다. 따라서 해당 관청을 구성하는 공무원이 교체되어도 관청에 대한 훈령의 효력은 유지된다.

따라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사항을 훈령의 대상으로 설명한 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문 7.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정답 4번

①

위원장은 **비상임**이고, 정무직으로 하는 위원은 **상임위원 1명**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5명의 위원은 비상임**이고 **1명의 위원은 상임**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명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 국무총리를 거침 → 대통령의 임명**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NoteBase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NoteBase

문 8.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상 수사경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에 관한 시비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시로 진정을 받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5년간 연속으로 비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2년간 연속으로 수사부서 전입을 기피하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2번

①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수사경과를 의무적으로 해제**한다.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1. 직무와 관련한 금품 · 향응 수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직권남용에 의한 구타 · 가혹행위 및 불법체포감금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 성 관련 비위, 중요 수사 · 단속정보 누설 · 유출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

인권침해·편파수사로 다수의 진정을 받는 등 공정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 의무적 해제사유가 아니다.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2. 인권침해, 편파수사를 이유로 다수의 진정을 받는 등 공정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③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는 **5년간 연속하여 비수사부서에 근무하면 수사경과를 의무적으로 해제**한다. 이를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해제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2. 3년간 연속으로 제3조제1항 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부칙(제1204호, 2026. 4. 6.) 제1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NoteBase

④

수사부서 근무자로 선발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을 기피하는 행위는 수사업무 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 포함되어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전입 기피에 따른 해제를 위해 반드시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해제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
3. 수사업무 능력 · 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④ 제2항 제3호의 '수사업무 능력 · 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2.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사부서 근무자로 선발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부서 전입을 기피하는 경우

NoteBase

문 9.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의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공무원이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30일 이내에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정답 3번

①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으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해진 경우의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4. 천재지변이나 전시 · 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국가공무원법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3, 2013.8.6, 2015.5.18, 2015.12.24, 2018.3.20, 2021.6.8, 2026.6.2>
3.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NoteBase

②

국외 유학을 이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3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8.6, 2015.5.18, 2015.12.24, 2021.6.8, 2024.12.31, 2026.6.2>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국가공무원법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3, 2013.8.6, 2015.5.18, 2015.12.24, 2018.3.20, 2021.6.8, 2026.6.2>
5. 제71조제2항제2호와 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선지는 신고와 복직 명령의 시기를 서로 뒤바꾸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NoteBase

④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연구를 하는 경우의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8.6, 2015.5.18, 2015.12.24, 2021.6.8, 2024.12.31, 2026.6.2>
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 연구 등을 하게 된 때

국가공무원법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3, 2013.8.6, 2015.5.18, 2015.12.24, 2018.3.20, 2021.6.8, 2026.6.2>
10.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NoteBase

문 10.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심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정답 1, 2번

①

징계등 의결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연기하려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기 범위는 **30일 이내**이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①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②

출석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6.16>

NoteBase

③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출석통지를 관보에 게재하며,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0.22>

④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8조(경징계 등의 집행)
①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11.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감독자의 정상참작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②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
③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때
④ 기타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된 때

정답 2번

①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징계책임을 감경하거나 묻지 않을 수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3.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②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는 **행위자의 징계책임을 감경하거나 묻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이다. 감독자의 정상참작 사유로 열거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3.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때 2.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 휴가기간, 교육기간 등에 발생하거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등 감독자의 실질적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된 때 3.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4.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하직원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상 조치(전출 등)를 상신하는 등 성실히 관리한 이후에 같은 부하직원이 의무위반행위를 야기하였을 때 5. 기타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된 때

③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징계책임을 감경하거나 묻지 않을 수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1.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때

NoteBase

④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징계책임을 감경하거나 묻지 않을 수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5. 기타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된 때

NoteBase

문 12. 경찰상 강제집행의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접강제란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직접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② 강제징수의 일반법으로서 「국세징수법」이 있다.

③ 집행벌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대집행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작위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4번

①

직접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직접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②

국세징수법의 징수절차는 개별 법률의 준용 규정에 따라 국세 외의 공법상 금전채권 징수에도 적용되므로, **강제징수의 일반법적 역할**을 한다.

행정대집행법 제6조(비용징수)
①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집행벌인 이행강제금은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한다.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NoteBase

④

대집행의 대상은 **타인이 대신 이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비대체적 작위의무는 대집행으로 이행을 확보할 수 없다.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NoteBase

문 13.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2조 직무 범위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도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③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④ 최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2019. 6. 25. 시행)을 통해 불심검문 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신분증명을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정답 4번

①

경찰관의 직권 행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직권남용은 금지**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의 법정 직무에는 **범죄피해자 보호**가 포함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 2020.12.22>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③

수상한 행동이나 주변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는 불심검문 대상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NoteBase

④

2019. 6. 25. 시행 개정에서도 **제복 착용 경찰관의 신분증명 면제 규정은 신설되지 않았다**. 당시 법률은 불심검문 시 신분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규정하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2018. 12. 24. 일부개정) 제3조(불심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NoteBase

문 1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④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3, 4번

①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②

물건의 멸실·훼손 외의 재산상 손실도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② 물건의 멸실 · 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NoteBase

③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선지의 1년·3년은 잘못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④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은 소속 경찰관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4.29>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손실보상 결정권자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경찰관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9.19, 2025.4.29>
1. 소속 경찰관

NoteBase

문 15. 경찰조직 편성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통솔범위의 원리란 조직목적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② 명령통일의 원리란 조직 구성원 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③ 명령통일의 원리에 따르면 관리자의 공백 등을 대비하여 대리, 위임, 유고관리자 사전지정 등이 필요하다.

④ 계층제의 원리는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통하여 신중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직무를 권한과 책임에 따라 상하로 나누고 상위일수록 무거운 임무를 맡도록 하는 것은 **계층제의 원리**이다.
통솔범위의 원리는 한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적정한 수**에 관한 원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상하로 나누고 상위일수록 더 무거운 권한과 책임을 맡도록 하는 것은 **계층제의 원리**이다. 통솔범위의 원리는 한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정한 범위 안에서 부하를 배치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② O: 명령통일의 원리는 한 구성원이 **한 사람의 상관에게서 명령을 받고 그 상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원리이다. 여러 상관이 서로 다른 지시를 내릴 때 생기는 업무 혼선과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을 방지한다.

③ O: 지시와 보고를 특정 관리자에게만 집중시키면 그 관리자가 부재할 때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대리, 권한의 위임, 유고관리자의 사전지정 등을 통해 **관리자 공백 시 지휘·보고를 담당할 사람과 권한**을 정해 두어야 한다. 이는 명령통일의 원리를 경직되게 적용할 때 생기는 한계를 보완한다.

④ O: 계층제에서는 각 계층에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고 상급자가 하급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 내용을 계층별로 검토**하여 오류나 부적절한 판단을 걸러 낼 수 있으므로 신중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통솔범위의 원리를 계층제의 원리와 혼동한 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문 17.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한구역이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④ 통제구역이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정답 2번

①

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할 수 없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3조
② 1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 된다**. 중요성과 가치에 따른 구분 표시도 비밀의 보관을 드러내므로 금지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4조
①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한구역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3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이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2. 제한구역: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3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

④

통제구역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이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3. 통제구역: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

NoteBase

문 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3번

①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정보도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한다.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와 함께 **대상 보도 내용, 정정 청구 이유 및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NoteBase

③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경우에는 언론사등이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④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한 분쟁에서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모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조정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NoteBase

문 19.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상 감사결과의 조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시정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피감사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징계 또는 문책 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 변상명령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나 그 밖의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의 조치는 **개선 요구**이다.

경찰청 감사 규칙 4. 개선 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 ·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한다.

경찰청 감사 규칙 5.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NoteBase

㉣

법령상 징계·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한다.

경찰청 감사 규칙 1. 징계 또는 문책 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를 한다.
변상명령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법정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다.

경찰청 감사 규칙 제10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시정 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 · 회수 · 환급 ·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NoteBase

문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서면으로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3번

①

정보공개는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도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청구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③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행정심판)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NoteBase

④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21. 범죄원인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Miller는 범죄는 하위문화의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하였다.

② Cohen은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이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인해 중류계층에 대한 저항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게 되는데 범죄는 이러한 하위문화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한다.

③ '사회해체론'과 '아노미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구조의 특성에서 찾는 사회적 수준의 범죄원인이론이다.

④ Durkheim은 좋은 자아관념이 주변의 범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좋은 자아관념이 범죄적 환경에서도 비행을 억제한다는 설명은 **Reckless의 봉쇄이론**에 해당한다.
Durkheim은 사회규범의 규제력이 약해지는 **아노미**를 설명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Miller의 하위문화이론은 하류계층 청소년의 비행을 그들이 속한 문화의 가치와 규범에 동조한 결과로 본다. 따라서 전체 사회의 기준에서는 범죄인 행위도 **자신이 속한 하위문화의 기준을 따르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② O: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에서는 하류계층 청소년이 중류계층의 성공 기준에 맞는 지위를 얻기 어려워 **지위좌절**을 겪는다고 본다. 이들은 중류계층의 가치에 반발하고 그 가치를 뒤집은 비행하위문화를 집단적으로 형성하여, 그 안에서 인정과 지위를 얻으려 한다. 비행은 이러한 하위문화의 가치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③ O: 사회해체론은 지역사회의 유대와 비공식적 통제력이 약화되는 조건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는다.
아노미이론은 사회규범의 통제력 약화나 문화적으로 강조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할 제도적 수단의 괴리로 범죄를 설명한다. 두 이론 모두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보다 **사회구조와 사회적 조건**에 주목한다.

④ X: 좋은 자아관념이 범죄적 환경의 영향을 막아 비행을 억제한다는 설명은 Durkheim이 아니라 **Reckless의 봉쇄이론**에 해당한다. 이 이론에서 좋은 자아관념과 자기통제 등은 개인 내부의 억제력인 내적 봉쇄를 이루며, 외부의 범죄 유혹과 압력에 저항하게 한다. Durkheim의 아노미 개념은 사회규범의 규제력이 약해진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학자와 이론을 잘못 연결한 ④가 가장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문 22.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를 범한 자의 주거가 분명한 경우라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한 경범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② 거짓신고
③ 암표매매
④ 업무방해

정답 2번

②

거짓신고의 법정형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벌금의 다액이 50만원을 넘으므로 경미사건의 체포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주거가 분명해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5.22>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3.1.25, 1980.12.18, 1995.12.29>

④

업무방해의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이다. 따라서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만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3.1.25, 1980.12.18, 1995.12.29>

NoteBase

문 23.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은 지역경찰관서장의 업무이다.

②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은 주민의 경찰업무에의 협조도로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③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는 순찰근무에 해당한다.

④ 지역경찰관은 강제추행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친고죄에 해당함을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경찰서에 전달해야 한다.

정답 2번

①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의 일일근무를 지정하고 지휘·감독하는 직무는 **순찰팀장**에게 속한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 · 감독

②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주민과 경찰의 협력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므로, **주민의 경찰업무 참여와 협조 정도**를 경찰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③

비상 및 작전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차량·선박 등의 통행을 통제하는 업무는 **경계근무**에 해당한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NoteBase

④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장 제출은 사건 처리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4호) 제2조
제2조(친고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96조 및 제3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NoteBase

문 24.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응급학대범죄의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행하는 조치를 임시조치라 한다.

② 응급조치상 격리란 학대행위자를 48시간을 기한으로 피해아동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③ 임시조치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판사의 결정으로 학대행위자의 권한 또는 자유를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 조치이다.

④ 긴급임시조치에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 있다.

정답 3번

①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해 즉시 하는 조치는 **응급조치**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 · 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2024.12.20>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5.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NoteBase

②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하는 응급조치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72시간 이내**이다. 그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고 보호에 필요하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법원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 · 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2024.12.20>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2024.12.2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 <신설 2021.1.26>

NoteBase

③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판사가 결정으로 학대행위자의 권한이나 자유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 · 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NoteBase

④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판사가 결정하는 임시조치이며, 사법경찰관이 하는 긴급임시조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 · 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NoteBase

문 25. 다음 중 수사구조개혁 찬성 측에서 채택할 수 있는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기소 단계의 권한을 분산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모든 권한이 검사에 집중되어 있어 각종 폐해가 발생하더라도 견제나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② 수사와 기소의 분리, 형사사법 권한의 분산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각자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은 물론 국민 편익 제고가 가능하다.

③ 경찰은 수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수사지휘 역량 및 수사 과정의 인권보장제도 강화와 수사 전문성 함양에 노력하고 있고, 경찰권을 분산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 등 다양한 경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④ 막강한 정보수집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에의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어렵게 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경찰의 정보수집력과 독자적 수사권이 결합하면 권력이 집중되고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반대 논거**이다. 찬성 측은 권한 분산과 함께 경찰수사의 책임성 및 통제 장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시험 당시 수사구조개혁 논의에서 각 진술이 찬성 측의 논거로 적절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O: 검찰에 수사·기소 권한이 집중되어 견제가 어렵다는 비판은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주요국의 권한 분산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기존 수사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찬성 논거이다.

② O: 수사와 기소의 역할을 나누면 경찰과 검찰이 각자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서로를 견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역할 분담을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국민 편익 향상에 연결하므로 찬성 측에서 채택할 수 있다.

③ O: 수사지휘 역량·인권보장·수사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은 경찰이 확대된 수사권에 걸맞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근거이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도 **경찰의 권한 집중과 불공정 수사를 방지할 보완책**을 제시하므로 개혁을 지지하는 논거가 된다.

④ X: 경찰의 정보수집력에 독자적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권력이 집중되고 수사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는 **수사구조개혁에 반대하는 논거**이다. 찬성 측의 논거로 설명하려면 경찰의 권한 분산과 인권보장·통제 장치를 함께 마련하여 이러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찬성 측의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NoteBase

문 26.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한외마약이란 일반약품에 마약성분을 미세하게 혼합한 약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감기약 등으로 판매되는 합법의약품이다.

② 향정신성의약품 중 덱스트로 메트로판은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며 의존성과 독성이 강하다.

③ 마약의 분류 중 합성 마약으로는 헤로인, 옥시코돈, 하이드로폰 등이 있다.

④ GHB는 무색·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특히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정글 주스'라고도 불린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한외마약은 마약성분이 다른 약물과 혼합된 제제 중 **다시 마약으로 제조·제제할 수 없고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마약에서 제외되므로 감기약 등 의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한외마약은 다른 약물과 배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제제이다. 이러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마약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감기약 등에 사용된다. 단순히 마약성분의 양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한외마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X: 덱스트로 메트로판은 진해작용이 있지만 **통상적인 치료용량에서 의존성과 독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의존성 사례가 드물고 권장량에서 부작용도 드물다는 점에서, 의존성과 독성이 강하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다만 과량으로 남용하면 환각이나 의식장애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남용해도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③ X: 천연마약·반합성마약·합성마약으로 나누는 분류에서, 헤로인과 옥시코돈은 천연 아편 성분의 화학구조를 변형하여 얻는 **반합성마약**이다. 따라서 이들을 합성마약의 예로 분류한 부분이 틀렸다. 합성마약의 대표적인 예로는 메사돈과 펜타닐이 있다.

④ X: GHB는 **'물뽕' 또는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져 있다. 무색·무취이고 짠맛이 나는 액상 형태와 성범죄 악용에 관한 설명은 GHB의 특징에 해당하지만, '정글 주스'라는 속칭을 연결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설명은 ①이다.

NoteBase

문 27. 과학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유류품 수사시 착안점으로 동일성, 관련성, 기회성, 완전성을 들 수 있는바, 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은 완전성과 관련된다.
㉡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지문을 제외하고 남은 지문은 범인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으로서 이를 유류지문이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마르지 않은 진흙을 적당히 눌렀을 때 나타나는 지문은 역지문이다.
㉢ 각막의 혼탁은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24시간이 되면 현저하게 흐려지고, 48시간이 되면 불투명해진다.
㉣ 시체굳음은 턱관절에서 경직되기 시작하여 사후 12시간 정도면 전신에 미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유류품이 범행 당시 상태로 보전되었는지는 **완전성**의 문제이며, 진흙에 눌러 남긴 지문은 융선과 골이 반대로 나타나는 **역지문**이다. 사후변화의 시간은 각 현상이 나타나고 진행하는 일반적인 경과를 기준으로 이해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 O: 유류품 수사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물건인지를 보는 동일성, 범인의 물건인지를 보는 관련성, 범인이 현장에 남길 기회가 있었는지를 보는 기회성, 범행 당시 상태가 보전되었는지를 보는 완전성을 검토한다. 따라서 **범행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완전성에 해당한다.

㉡ O: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가운데 피해자나 현장출입자 등 범인 이외의 사람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자지문을 제외하면, 범인 지문으로 추정되는 유류지문이 남는다. 한편 마르지 않은 진흙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튀어나온 융선 부분이 진흙에 패여 **융선의 이랑과 고랑이 반대로** 나타나므로 역지문에 해당한다.

㉢ O: 각막혼탁은 사후에 각막이 투명성을 잃고 점차 흐려지는 현상이다. 일반적인 경과는 사후 12시간 전후부터 흐려지기 시작하고, 약 24시간에는 현저하게 흐려지며, 약 48시간에는 불투명해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혼탁의 시작, 현저한 혼탁, 불투명화**를 구분한 제시문의 시간 관계가 성립한다.

㉣ O: 시체굳음은 사망 직후 일시적으로 이완된 근육이 시간이 지나면서 굳는 현상이다. 근육의 ATP가 소모되어 수축 상태가 고정되며, 일반적으로 **턱관절에서 시작하여 전신으로** 진행해 사후 약 12시간이면 전신에 미친다. 다만 진행 속도는 온도와 신체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시된 시간은 일반적인 기준이다.

따라서 ㉠, ㉡, ㉢, ㉣이 모두 옳으며, 이를 모두 포함한 선택지는 ④이다.

NoteBase

문 28. 다음 중 경비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사장 경호와 관련하여 제1선(안전구역)에서는 출입자 통제관리 및 MD 설치 운용을 한다.

② 개표소 경비와 관련하여 제2선(울타리 내곽)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한다.

③ 국가중요시설 경비와 관련하여 제2지대(주방어지대)에서는 주·야간 경계요원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통제가 될 수 있도록 경비인력을 운용한다.

④ 국가중요시설 경비와 관련하여 제3지대(핵심방어지대)에서는 시설의 보강(지하화, 방호벽, 방탄막 등)을 최우선으로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주·야간 경계요원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통제를 확보하는 경비인력 운용은 **제3지대인 핵심방어지대**의 대책이다. 제2지대는 고정초소와 순찰근무 등을 통해 시설 내부로의 침입을 저지하는 주방어지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행사장 경호의 제1선은 경호대상자가 위치하는 안전구역으로, 위해 요소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한다. 출입자 자격과 비표를 확인하고 **금속탐지기(MD)로 검색**하므로 출입자 통제관리와 MD 설치·운용은 제1선의 활동이다.

② O: 개표소 경비의 제2선은 울타리 내곽으로, 개표소로 들어가는 사람을 걸러 내는 구역이다. 이곳에서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하여 허가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막는다.

③ X: 주·야간 경계요원을 계속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경비인력을 운용하는 것은 **제3지대인 핵심방어지대**의 대책이다. 제2지대인 주방어지대는 시설 내부와 핵심시설로 들어오는 적을 저지하는 지대로, 고정초소와 순찰근무 등을 통해 출입자를 통제하고 불법 침입을 감시한다.

④ O: 제3지대인 핵심방어지대에는 시설의 주된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시설이 있으며, 이곳은 침투한 적을 최종적으로 저지하는 방호지대이다. 따라서 핵심시설이 공격으로 기능을 잃지 않도록 **지하화·방호벽·방탄막 등 시설 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

따라서 제3지대의 경비인력 운용을 제2지대의 것으로 설명한 ③이 적절하지 않다.

NoteBase

문 29. 「통합방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위①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중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이 되고,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시·도지사이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국무총리이다.

④ 국방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정답 2번

①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시·도지사에게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통합방위법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④ 시 · 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 · 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20.12.22>

②

시·도지사가 선포 건의를 받아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하려면 **시·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선지는 이를 중앙협의회로 잘못 제시하였다.

통합방위법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⑤ 시 ·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시 · 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NoteBase

④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방부장관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통합방위법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② 제1항의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2014.11.19, 2017.7.26>
1.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방부장관

NoteBase

문 31. 운전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등을 운전할 수 있다.

②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종 특수면허 중 소형견인차 면허를 가지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④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정답 2번

①

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자동차 중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는 제외**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KM3LP7vSXCskYBjgdEFqvKWCbA7EW5Hl/view?usp=drivesdk

②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서장**이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임시운전증명서)
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③

제1종 특수면허 중 소형견인차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범위는 **총중량 3.5톤 이하**이다.

https://drive.google.com/file/d/1PhON4b8N3eFmlnNqA57AGDeRQl4Gl331/view?usp=drivesdk

NoteBase

④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이다.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된다.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또는 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이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7.10.24, 2020.6.9, 2021.1.12, 2021.10.19>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4.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 협정 또는 약정

NoteBase

문 32.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음주측정 시에 사용하는 불대는 1회 1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불일치할 경우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우선한다.

③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음주운전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퍼센트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4번

①

음주측정용 불대는 **음주측정 1회당 1개**를 사용한다.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2025년 표준안) 제30조
③ 음주측정 1회당 1개의 음주측정용 불대(Mouth Piece)를 사용한다.

②

호흡측정은 기기의 상태·측정방법·피측정자의 협조 정도에 따라 오차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혈액 채취·검사 과정의 조작이나 오류 등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혈액검사 측정치를 우선**하여 신뢰한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등 참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NoteBase

③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보호법익·적용영역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두 죄가 모두 성립하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를 인정하는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수치로 규정하여,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농도의 최저기준치를 초과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이는 위와 같은 혈중 알코올농도의 주취상태에서의 운전행위로 인하여 추상적으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봄으로써 도로에서 주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반면,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④

혈중알코올농도 0.15퍼센트는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최초 위반의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NoteBase

문 33.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②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다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다해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조사규칙」에 따라 차대차 사고로서 당사자 간의 과실이 동일한 경우 피해가 경한 당사자를 선순위로 지정한다.

④ 택시 운전자인 甲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乙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乙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당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2번

①

사고 후 조치는 피해의 크기뿐 아니라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할 필요**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피해 확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여 피해자의 추격 등으로 추가 위험이 생길 수 있다면 사고 후 미조치죄가 성립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4차로의 도로이고 사고시간은 낮이었던 사실,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는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등이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함과 동시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피해자 공소외 1이 후행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우측 갓길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미안하다는 손짓만 하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반대편 도로로 넘어간 다음 피해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편으로 진행하여 전주 방향으로 운전해 간 사실, 피해자들은 위 사고 현장에서 약 30분가량 머물면서 112에 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정지하라고 손짓하였음에도 그대로 간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NoteBase

②

녹색등화가 점멸하는 동안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이다. 점멸 전에 횡단을 시작했는지는 구별하지 않으며, 보행자에게 적용되는 점멸신호가 운전자의 보호의무를 없애지는 않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 사유로서 제6호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보행신호등의 '녹색 등화의 점멸신호'의 의미를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횡단보도의 통행에 관한 신호일 뿐이어서 보행신호등의 수범자가 아닌 차의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행자보호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보행신호등의 녹색 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③

교통조사관은 차대차 사고의 당사자 간 **과실이 같으면 피해가 경한 당사자를 선순위로 지정**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2. 차대차 사고로서 당사자 간의 과실이 동일한 경우 피해가 경한 당사자를 선순위로 지정

NoteBase

④

적색등화에서 우회전할 때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다른 차의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운전의무**이다.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승용차를 충격했다는 사정만으로 신호위반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도로교통법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NoteBase

문 34. 정보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련 문서의 배포범위를 제한하거나 폐기 대상인 문서를 파기하는 등의 관리방법은 물리적 보안조치에 해당한다.

② 정보배포의 원칙으로 필요성, 적당성, 보안성, 적시성, 계속성이 있다.

③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임시적, 단편적, 지역적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첩보를 SRI(특별첩보요구)라고 한다.

④ 정보배포의 원칙 중 계속성은 특정 정보가 필요한 정보사용자에게 배포되었다면 그 정보의 내용이 계속 변화되었거나 관련 내용이 추가적으로 입수되었거나 할 경우 정보는 계속적으로 사용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문서의 배포범위 제한과 폐기 대상 문서의 파기는 **'분류'에 의한 보안조치**이다. 물리적 보안조치는 보호구역 설정이나 시설 출입 통제처럼 장소와 시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둔다.

선지별 해설

① X: 문서의 배포범위를 제한하거나 폐기 대상 문서를 파기하는 것은 **'분류'에 의한 보안조치**이다. 문서의 취급 범위와 처리 방법을 정하여 정보 누설을 막는 방식이다. 물리적 보안조치는 보호구역 설정이나 시설의 출입 통제처럼 정보가 보관·취급되는 장소와 시설을 보호하는 조치이다.

② O: 정보배포에는 필요성·적당성·보안성·적시성·계속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필요성은 알아야 할 대상에게만 배포하는 것, 적당성은 사용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양과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 보안성은 정보 누설을 방지하는 것이다. 적시성은 필요한 때에 배포하는 것이고, 계속성은 관련 정보의 변화나 추가 내용을 이어서 전달하는 것이다.

③ O: SRI(특별첩보요구)는 **돌발적인 특수사건의 단기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적·단편적·지역적인 첩보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첩보를 요구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④ O: 계속성은 이미 정보를 받은 사용자에게 **그 정보의 변화나 새로 입수된 관련 내용**을 계속 배포하여 판단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이다. 최초 배포로 끝내지 않는다는 뜻이며,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전달해야 한다는 적시성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옥외집회와 시위의 장소가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12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3번

①

옥외집회나 시위의 장소가 두 곳 이상의 시·도경찰청(종전 지방경찰청) 관할에 걸치면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 · 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 · 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 · 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NoteBase

②

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미비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①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신고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지 않게 되면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지의 12시간은 잘못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③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옥외집회나 시위의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36.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금품수수죄와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간첩죄, 물건제공이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

②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정기신고를 해야 한다.

③ 피보안관찰자는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④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법무부장관)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답 4번

①

목적수행·자진지원·금품수수와 내란목적살인·외환유치·적국을 위한
간첩·물건제공이적·모병이적·시설제공이적은 **보안관찰해당범죄에 포함**된다. 다만 자진지원 중 **목적수행 범죄의 선동·선전이나 사회질서 혼란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의 날조·유포 행위는 제외**한다.

보안관찰법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88조 · 제89조(第87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 제90조(第87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 · 제92조 내지 제98조 · 제100조(第99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第99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第1項중 第4條第1項第6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제1항 · 제3항(第2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 제4항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5.31>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 · 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teBase

②

정기신고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한다.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한다.

보안관찰법 제18조(신고사항)
②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구대 · 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1.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2. 통신 · 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3. 3월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申告를 마치고 중지한 旅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관할경찰서장이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③

국외여행은 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여행은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는 경우**에 여행예정지 등을 미리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안관찰법 제18조(신고사항)
④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구대 · 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거소변경을 신청하여 변경결정된 거소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④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다.

보안관찰법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③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NoteBase

문 37.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③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 10일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방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정답 3번

①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북한 방문)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통일부장관은 **그 승인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북한 방문)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③

북한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남한 주민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방문승인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 · 제6항 단서 및 제8항 단서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남한의 주민과 재외국민(법 제9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NoteBase

④

남북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의 왕래 · 접촉 · 교역 · 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 · 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NoteBase

문 38.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재난상륙·긴급상륙·승무원상륙 허가기간은 각각 30일 이내이며, 난민임시상륙 허가기간은 90일 이내이다.

③ 수사기관이 출입국사범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사건을 인계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2번

①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국민,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은 국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2021.7.13, 2025.3.18>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②

승무원의 상륙허가는 **15일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므로, 승무원상륙도 30일 이내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출입국관리법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이 신청하면 15일의 범위에서 승무원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려는 외국인승무원
2.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으로 옮겨 타려는 외국인승무원

NoteBase

③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출입국사범 사건을 입건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사건을 인계**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01조(고발)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立件)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④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외국인의 생체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생체정보에는 **지문·얼굴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0, 2014.3.18, 2018.3.20, 2020.6.9, 2021.8.17, 2024.12.20>
15. "생체정보"란 이 법에 따른 업무에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 · 얼굴 · 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③ 법무부장관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생체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NoteBase

문 3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국인 피의자 체포·구속 시,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7일 이내 해당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미군의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 미군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며, 공무집행의 범위에는 공무집행으로 인한 범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에 부수하여 발생한 범죄도 포함된다.

③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미국 군대의 구성원에 의존하는 자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④ 주한미군의 공무 중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전적으로 미군 측의 책임으로 밝혀진 경우 미군 측이 75%, 한국 측이 25%를 부담하여 배상한다.

정답 1번

①

중국인 피의자가 체포·구속되면 **본인의 요청 없이도** 지체 없이 영사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늦어도 **그 강제행동이 취해진 날부터 4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 제7조 제1항
1.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파견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포함하는 파견국 국민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구속, 체포 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였을 경우, 그 당국은 그 국민이 요구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간에 지체 없이 그러나 그 강제행동이 취해진 날부터 4일이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파견국 영사기관에 그 국민의 이름, 신분확인 방식, 그 강제행동의 이유, 날짜와 장소 그리고 그 국민을 접촉할 수 있는 정확한 장소를 통보한다. 그러나 파견국 국민이 접수국의 출입국관리 법령 위반으로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구속되는 경우,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국민이 서면으로 그 통보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영사기관에 통보한다.

NoteBase

②

공무집행에 따른 작위·부작위로 발생한 범죄는 **미군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며, 공무의 기능 수행에 부수하여 발생한 범죄도 포함된다. 다만 **근무시간 중의 모든 행위가 공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수행하는 공무의 기능상 요구되는 행위여야 한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3항 (가) (2)
第22條 刑事裁判權
3. 裁判權을 行使할 權利가 競合하는 境遇에는 다음의 規定이 適用된다.
(가) 合衆國 軍 當局은 다음의 犯罪에 關하여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이나 軍屬및 그들의 家族에 對하여 裁判權을 行使할 第一次的 權利를 가진다.
(2) 公務執行中의 作爲 또는 不作爲에 依한 犯罪(나) 其他의 犯罪에 關하여는 大韓民國 當局이 裁判權을 行使할 第一次的 權利를 가진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3항 (가)에 관하여 제1항
第3項 (가)에 關하여
1.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또는 軍屬이 어느 犯罪로 立件된 境遇에 있어서 그 犯罪가 그 者에 依하여 犯하여진 것이라면, 그 犯罪가 公務執行中의 行爲나 不作爲에 依한 것이라는 뜻을 記載한 證明書로서 合衆國의 主務軍當局이 發行한 것은 第一次的 裁判權을 決定하기 爲한 事實의 充分한 證據가 된다. 本條 및 本 合意議事錄에서 使用된 "公務"라 함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및 軍屬이 公務執行 期間中에 行한 모든 行爲를 包含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者가 執行하고 있는 公務의 機能으로서 行하여질 것이 要求되는 行爲에만 適用되는 것을 말한다.

NoteBase

③

협정은 미군 구성원·군속과 그 가족에게 적용된다. 가족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미군 구성원 또는 군속에게 의존하는 부모·21세 이상 자녀·기타 친척**이 포함된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
第1條 定義 本 協定에 있어서,(가)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領域안에 있는 아메리카合衆國의 陸軍, 海軍 또는 空軍에 屬하는 人員으로서 現役에 服務하고 있는 者를 말한다. 다만, 合衆國 大使館에 附屬된 合衆國 軍隊의 人員과 改正된 1950年 1月 26日字 軍事顧問團協定에 그 身分이 規定된 人員은 除外한다.(나) "軍屬"이라 함은 合衆國의 國籍을 가진 民間人으로서 大韓民國에 있는 合衆國 軍隊에 雇傭되거나 同 軍隊에 勤務하거나 또는 同伴하는 者를 말하나, 通常的으로 大韓民國에 居住하는 者, 또는 第15條第1項에 規定된 者는 除外한다. 本 協定의 適用에 關한 限 大韓民國 및 合衆國의 二重 國籍者로서 合衆國에 依하여 大韓民國에 들어온 者는 合衆國 國民으로 看做한다.(다) "家族"이라 함은 다음의 者를 말한다.(1) 配偶者 및 21歲未滿의 子女(2) 父母 및 21歲以上의 子女 또는 其他 親戚으로서 그 生計費의 半額以上을合衆國 軍隊의 構成員 또는 軍屬에 依存하는 者

④

공무 중 사건으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미국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이 75%, 대한민국이 25%**를 분담한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5항 (마) (1)
第23條 請求權
5. 公務執行中의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이나 雇傭員(大韓民國 國民이거나 大韓民國에 通常的으로 居住하는 雇傭員을 包含한다)의 作爲 또는 不作爲 또는 合衆國 軍隊가 法律上 責任을 지는 其他의 作爲, 不作爲 또는 事故로서, 大韓民國안에서 大韓民國 政府 以外의 第三者에 損害를 加한 것으로부터 發生하는 請求權(契約에 依한 請求權 및 本條第6項이나 第7項의 適用을 받는 請求權은 除外된다)은, 大韓民國이 다음의 規定에 따라 이를 處理한다.
(마) 前記(가) 乃至 (라)의 規定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라 請求를 充足시키는데所要된 費用은 兩 當事國이 다음과 같이 이를 分擔한다.
(1) 合衆國만이 責任이 있는 境遇에는 裁定되어 合意되거나 또는 裁判에 依하여決定된 金額은 大韓民國이 그의 25「퍼센트」를, 合衆國이 그의 75「퍼센트」를負擔하는 比率로 이를 分擔한다.

NoteBase

문 40.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터폴 협력의 원칙으로는 주권의 존중, 일반법의 집행, 보편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업무방법의 유연성 등이 있다.

② 1923년 비엔나에서 19개국 경찰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위원회(ICPC :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mmission)를 창립하였다.

③ 법무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교환, 국제범죄의 동일증명 및 전과조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는 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흑색수배서(Black Notice), 장물수배를 위한 장물수배서(Stolen Property Notice), 범죄관련인 소재확인을 위한 청색수배서(Blue Notice) 등이 있다.

정답 3, 4번

①

인터폴 협력은 **주권 존중과 일반범죄에 대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한다. 지리·언어적 차이를 넘어 협력하는 **보편성**, 회원국의 규모나 분담금에 관계없이 같은 권리를 갖는 **평등성**, 각국의 제도와 상황에 맞추는 **업무방법의 유연성**도 협력의 원칙이다.

③

인터폴과의 협력에서 국제범죄의 정보·자료 교환, 동일증명·전과 조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정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법무부장관으로 규정한 부분이 틀리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8조(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2. 국제범죄의 동일증명(同一證明) 및 전과 조회
3.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그 조사

NoteBase

④

흑색수배서는 **신원불상 시신의 신원확인**, 청색수배서는 **범죄수사 관련자의 소재확인과 정보수집**을 위한 수배서이다. 그러나 **장물수배서는 현행 국제수배서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난미술품 수배서의 근거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도난 차량·선박·미술품 등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

인터폴 정보처리규칙 제88조 제1항 b호 — 한국어 요지
청색수배서는 범죄수사 관련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발행한다.

인터폴 정보처리규칙 제91조 제1항 — 한국어 요지
흑색수배서는 신원불상 시신의 신원확인을 위해 발행한다.

인터폴 정보처리규칙 제94조(삭제) — 한국어 요지
도난미술품 수배서에 관한 제94조는 현행 통합본에서 삭제된 조항으로 표시되어 있다.

인터폴 제93차 총회 결의 제8호(GA-2025-93-RES-08) 제2쪽 제94조 삭제 승인 및 시행 결정 부분 — 한국어 요지
제93차 총회는 보고서 부록에 제시된 정보처리규칙 제94조 삭제를 승인하고, 해당 개정을 총회 폐회 즉시 시행하도록 결정했다.

NoteBase